김포한강 예미지 임차인 모집공고 (기업형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임대기간 8년)입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17.05.25.이며, 이 공고문은 김포한강 예미지 홈페이지 (http://yemizi-newstay.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임.
- 김포한강 예미지 견본주택 개관은 2017.05.26(금) 10:00부터이며, 카탈로그는 계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청약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청약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희망 타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 청약 신청 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완료 후 청약신청의 변경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청약접수 완료 전 청약접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수항목 등을 잘 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신혼부부, 재능기부자, 장기임차인, 산업단지 종사자)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 · 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반청약의 임차인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전산추첨 및 동 · 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일반청약의 세대수는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630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임차인 선정세대로 전환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직접 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 일에 청약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하여 계약체결 (정당계약 기간 내) 전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제외)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양도 전대금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 등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1인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김포한강 예미지(기업형임대주택)는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합니다.

I 임차공급내역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693-2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17개동 1,770세대 (특별공급 53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 면적				계약 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세대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포함)		세대수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 면적				신혼 부부	재능 기부	장기임차		산업단지			
										4년 장기 임차	8년 장기 임차	4년 장기 임차	8년 장기 임차		
70㎡	70A	70.9700	25.3681	96.3381	36.3718	132.7099	248	12	2	11	35	4	10	74	174	2018년 10월 중 (예정)
77㎡	77A	77.9600	27.4297	105.3897	39.9542	145.3439	337	17	3	15	47	5	14	101	236	
	77B	77.9600	27.6697	105.6297	39.9542	145.5839	137	7	1	6	19	2	6	41	96	
	77C	77.3600	28.0016	105.3616	39.6467	145.0083	249	12	2	11	35	4	10	74	175	
84㎡	84A	84.9700	29.4566	114.4266	43.5467	157.9733	799	40	8	36	112	12	32	240	569	
합계							1,770	88	16	79	248	27	72	530	1,240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70A / 77A, 77B, 77C / 84A)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단위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치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주거공용면적 등이 다소 상이하여 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김포한강 예미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서 도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	70A	77			84A
		77A	77B	77C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	70.9700	77.9600	77.9600	77.3600	84.9700

II 공급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단위 : 세대, 천원)

타입	전용면적 (㎡)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층 이상 기준)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017.09.29	입주 시	
70A	70.9700	248	70,000	3,000	4,000	63,000	503
77A	77.9600	337	75,000	3,500	4,000	67,500	554
77B	77.9600	137	75,000	3,500	4,000	67,500	554
77C	77.3600	249	75,000	3,500	4,000	67,500	554
84A	84.9700	799	80,000	4,000	4,000	72,000	605

- 상기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을 포함한 세대수입니다.
- 중도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사업주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매 1년 단위로 5%까지 조정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은 층별 · 동별 · 향별 · 측백세대 구분 등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월 임대료는 주택형별 · 층별로 차등이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 샷시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공사하여 제공하며, 설치비용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가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됩니다.)
- 해당 동호수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 및 월 임대료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으로 계약 체결하고 입주 3~6개월 전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에 각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납부금액을 단계별로(표준형 및 전환형 Ⅰ~전환형Ⅳ, 총6단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시와 입주전 선택한 보증금액의 차액은 잔금납부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선택한 전환보증금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이래의 전환보증금 및 전환 시 월 임대료 예시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기준으로 전환으로 4.7%를 적용하여 예시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입주 전 전환신청 접수 시 실제 전환보증금액에 따른 단계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전용면적	층 구분	공급 세대수	표준형		전환형 Ⅰ		전환형 Ⅱ		전환형 Ⅲ		전환형 Ⅳ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70A	70.9700	1층	8	70,000	464	44,400	565	95,500	365	123,600	255	151,700	144
		2층	11		480		580		380		270		160
		3층	11		488		588		388		278		168
		4층	11		496		596		396		286		176
		5층 이상	207		503		604		403		293		183
77A	77.9600	1층	12	75,000	512	49,400	612	100,500	412	128,600	302	156,700	192
		2층	16		529		629		429		319		209
		3층	17		537		637		437		327		217
		4층	17		546		646		446		336		226
		5층 이상	275		554		654		454		344		234
77B	77.9600	1층	5	75,000	512	49,400	612	100,500	412	128,600	302	156,700	192
		2층	7		529		629		429		319		209
		3층	7		537		637		437		327		217
		4층	7		546		646		446		336		226
		5층 이상	111		554		654		454		344		234
77C	77.9600	1층	9	75,000	512	49,400	612	100,500	412	128,600	302	156,700	192
		2층	9		529		629		429		319		209
		3층	12		537		637		437		327		217
		4층	12		546		646		446		336		226
		5층 이상	207		554		654		454		344		234
84A	84.9700	1층	29	80,000	559	54,400	659	105,500	459	133,600	349	161,700	239
		2층	43		577		677		477		367		257
		3층	44		586		687		486		376		266
		4층	44		595		696		496		386		275
		5층 이상	639		605		705		505		395		285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안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1년 단위 3% 인상 시, 아래 표에 따라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이 적용됩니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임대조건적용률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	1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119.41%	122.99%

-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최초 계약자는 2년 단위 계약 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이 계약 갱신 시에 일괄 반영됩니다.(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됨)

구분 적용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적용률	할인효과
납납부임대	임대보증금	100.00%	–	100.00%	3.00%	106.09%	–	106.09%	3.18%	112.55%	–	112.55%	3.38%	119.41%	–	119.41%	3.58%
조건	월임대료	100.00%	–	100.00%	3.00%	106.09%	–	106.09%	3.18%	112.55%	–	112.55%	3.38%	119.41%	–	119.41%	3.58%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 예시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 상기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 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합니다.
- 연체는 사용검사일부터 산정된 연차로 해당 연차 최초 계약자는 계약 시점 연차의 임대조건 적용률에 따라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예) 사용검사일 이후 6년차에 일반공급 계약자는 최초 계약 시점 대비 115.93%로 상승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적용됨)
- 특별공급의 4년, 8년 장기 임차, 산업단지 4년, 8년 장기 임차 계약으로 임차기간을 약정한 계약자의 임대조건은 일반공급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단, 4년 장기 임차 계약 시 2개월의 임대료 감면 혜택2년, 4년차 마지막 각 1개월의 월임대료 공제이 있으며, 8년 장기 임차 계약 시 6개월의 임대료 감면 혜택2년, 4년차 마지막 각 1개월, 6년 8년차 마지막 각 2개월의 임대료 공제을 드립니다.
- 단, 4년, 8년 장기 임차, 산업단지 4년, 8년 장기 임차 계약자가 계약 만료될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한 감면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임대료 감면 혜택) 및 위약금입주 전 계약해지 시, 일반 계약자와 동일한 위약금 기준 적용)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III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최초 입차인모집공고일 (2017.05.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자산보유액 및 소득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 특별공급 안내

모집분야		자격요건	비고
신혼부부 (영유아 자녀) 세대		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일 5년 미만 세대이면서 자녀가 없는 세대 (혼인일 : 2012.05.26. 이후), 또는 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0~7세 영유아 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출생일 : 2010.05.26 ~ 2017.05.25)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및 출생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출산이행서약서 (견본주택 비치)
재능기부	학습/상담/보육	– 방과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3급, 독서지도사3급, 전현직 국공립사립교사, 유아교육 관련 전공 교사, 아동심리상담1급, 동화연구사 등	■ 자격 기준 – 해당분야 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입증 서류 * 국가 또는 해당분야의 사단법인으로 부터 발급 * 최소 1년 이상의 인증 가능한 경력,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前 10년 이내 (2007.05.26.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재능기부자 운영관련 교육 – 최초 2년간 연 3회 이상 ■ 프로그램 운영 – 최소 연간 10시간, 2년간 20시간 이상 ※ 의무 불이행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계약갱신 거부 및 퇴거조치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공인외국어시험 (토익스피킹 6등급, HSK 5급, JLPT N2 이상), 어학관련 강사경력 3년 이상	
	예술 (미술, 음악, 요리, 조경)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 자격소지자, 경력2년이상	
	의료	– 전 현직의사(치전공의사자격면허소지자), 전 현직 약사(약사자격면허소지자, 전 현직 간호사5년 이상 경력자)	
	스포츠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요가강사 자격증, 요가지도자 2급 이상 등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스포츠센터(체육시설)등 3년이상 강사활동 경력자	
장기임차	4년 장기 임차	4년간 장기 임차 계약 희망자	중도 퇴거시 계약으로 인한 감면혜택에 상당하는 금액 및 위약금(입주 전 계약해지 시, 일반 계약자와 동일한 위약금 기준 적용)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8년 장기 임차	8년간 장기 임차 계약 희망자	
산업단지	4년 장기 임차	입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 등록업체에 한함) 기업체 종사자, 해당근무업체 재직증명서 제출 확인자	
	8년 장기 임차		

IV 공급일정

■ 청약신청(당첨자발표 포함) 및 계약기간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2017.05.26.(금 ~ 2017.05.28.(일)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	2017.05.29.(월) 16:00 이후 당사 견본주택	2017.06.08.(목) ~ 06.09(금) (2일간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2017.05.30.(화) ~ 2017.06.01.(목) 08:00~17:30 인터넷청약 접수	2017.06.07.(수) 17:00 이후, 금융결제원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t2you.com) / 당사 견본주택	

- 청오빙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지정계약 이후 발생한 전여세대와 특별공급 당첨자 지정계약 이후 발생한 전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달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V 계약체결

■ 계약일정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2017.06.08(목)~2017.06.09(금) 2일간, 10:00~17:00	김포한강 예미지 견본주택

■ 입대보증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994437-01-005112	(주)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401-501)
- 상기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입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금 입금증(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내용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아파트 입대차 계약용) • 계약금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등)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도장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원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월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계좌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VI 입주지정기간 및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18년 10월 중(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 보증금의 희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1호2호에 의거 임대보증금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키즈 맘카페, 경비실, 세탁실 등

■ 유의사항

■ 청약 · 당첨 · 입주 · 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사업자) 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N-투자증권(주)에 수탁하였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입자예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미입주 시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제출 및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사업주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상징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최초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소 의무거주 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의무거주 기간 내 중도 퇴거 시 사업주체에서 책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해지부수 (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시용료 정산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5백만원을 퇴거 시 지급유보하여 유보금은 공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 · 반환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급히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입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대차계약서상의 손해배상도 발생합니다.
- 중도금, 잔금 및 담월분 입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참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입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합니다.
- 입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입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입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입대료 및 관리비는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입대아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입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은 입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군 및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상 · 하수도, 공원 등) 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